

대구지방법원 2023. 6. 16 선고 2023가단1141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3. 6. 16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 2018. 4. 10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21,272,2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1,272,2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1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

판사이수정

별지

1) 소장 청구취지란에는 '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'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청구원인을 보면 위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, 소송물가액 산정내역서에서도 상속지분 1/2 지분을 반영하여 구하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제출하고 있으므로, 청구취지란의 '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'은 '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'의 단순 오기로 보기로 한다.